

2019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이 책자는 2019년 3월 현재 확인 가능한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참여시에는 반드시 운영기관 등을 통해
지원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I. 중견기업 소개

1. 중견기업이란?	3
2.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 주요통계	7
중견기업 실태조사	12
3. 중견기업 정책	
중견기업 비전 2280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15
4. 중견기업 지원기관	
중견기업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	17

II. 중견기업 지원사업

1. 인재확보 (인력·교육)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배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21
일학습병행 도입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3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5
중견기업 인재유입 인프라 구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노동부)	27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29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고용노동부)	3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3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35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9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41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3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특허청)	45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과정 (특허청)	47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8

2. 기술혁신 (기술·R&D)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 사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0
중소·중견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52
기술보호 상담·자문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53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5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6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7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8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0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방위사업청)	61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63
표준특허 창출지원 (특허청)	65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특허청)	66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특허청)	67

CONTENTS

산업기술혁신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74
기술상용화지원 (한국전기연구원)	75
애로기술지원 (한국기계연구원)	77
IBK차세대강소기업대출 (IBK기업은행)	78
IBK강소기업대출 (IBK기업은행)	79

3. 국제화 (수출·무역)

해외시장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수출상담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2
주력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한국우수상품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8
지사화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월드챔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
해외IT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4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6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7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지원(Global Partnerin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8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0
글로벌 M&A 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2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4
의료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수출 첫걸음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7
KOTRA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사절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9
YES FTA 컨설팅 (관세청)	110
한변동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111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113
중소·중견 수출 총력지원 보험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114
미중 무역분쟁 관련 우대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15
K-SURE 컨설팅 (한국무역보험공사)	116
중소·중견Plus+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118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119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120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122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한국무역협회)	123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건설협회)	125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해외건설협회)	127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9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 개발 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31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3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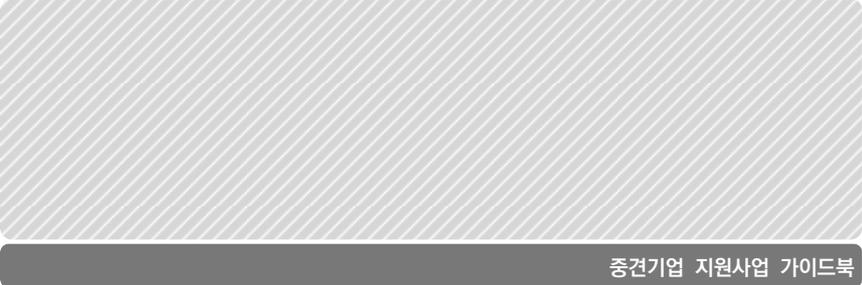
CONTENTS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137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39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41
수입금융(수입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42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우리은행)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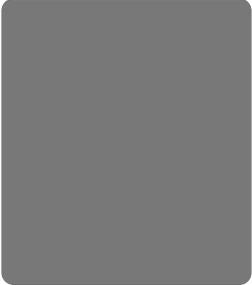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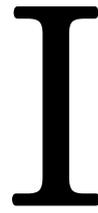
4. 경영혁신 (경영·동반성장)

중견기업 확인제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5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8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150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한국에너지공단)	151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153
그린크레딧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154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중소조선연구원)	155
해외정보화컨설팅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7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9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1
환경성적 산정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2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164
IBK시설투자대출 (IBK기업은행)	165
IBK토지분양협약대출 (IBK기업은행)	166
동반성장협력대출 (IBK기업은행)	167
환경안전설비투자펀드 (IBK기업은행)	168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IBK기업은행)	169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 (IBK기업은행)	170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한국수출입은행)	17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172
해외투자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173
해외사업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174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175
KDB Global Challengers 200 (한국산업은행)	176
시설투자 우대대출 (한국산업은행)	178
해외직접투자 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179
우량 중견(예비)기업 우대운영대출 (한국산업은행)	180
동반성장대출 (한국산업은행)	181
KDB-CIB 융합 프로그램 (한국산업은행)	182
설비투자펀드 (한국산업은행)	183
온렌딩대출 (한국산업은행)	184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한국산업은행)	185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186
유동화회사보증 (신용보증기금)	188
시설자금보증 (신용보증기금)	190
이행보증 (신용보증기금)	191
M&A 보증 (신용보증기금)	193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195
혁신성장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	196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보증기금)	197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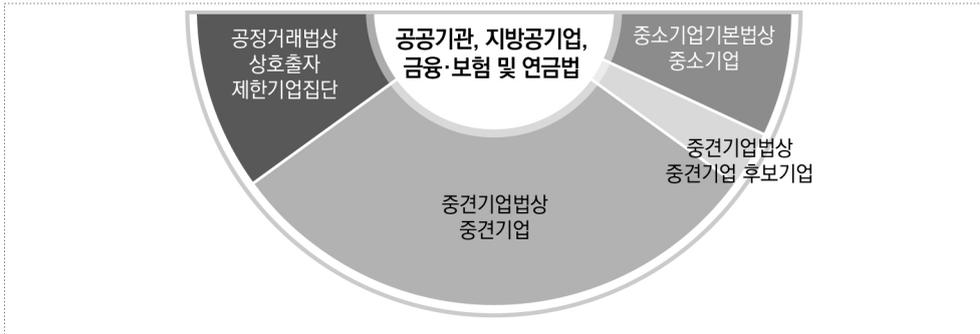


중견기업 소개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제외대상입니다.
-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②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③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④ 비영리법인
 - ⑤ 외국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⑥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접수를 진행해주시요. → 절차는 ‘중견기업 지원사업 - 중견기업 확인제도’에서 확인

중견기업 범위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A)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단,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업은 (A)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대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후보 기업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주된 업종별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매출액 550억원 이상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관련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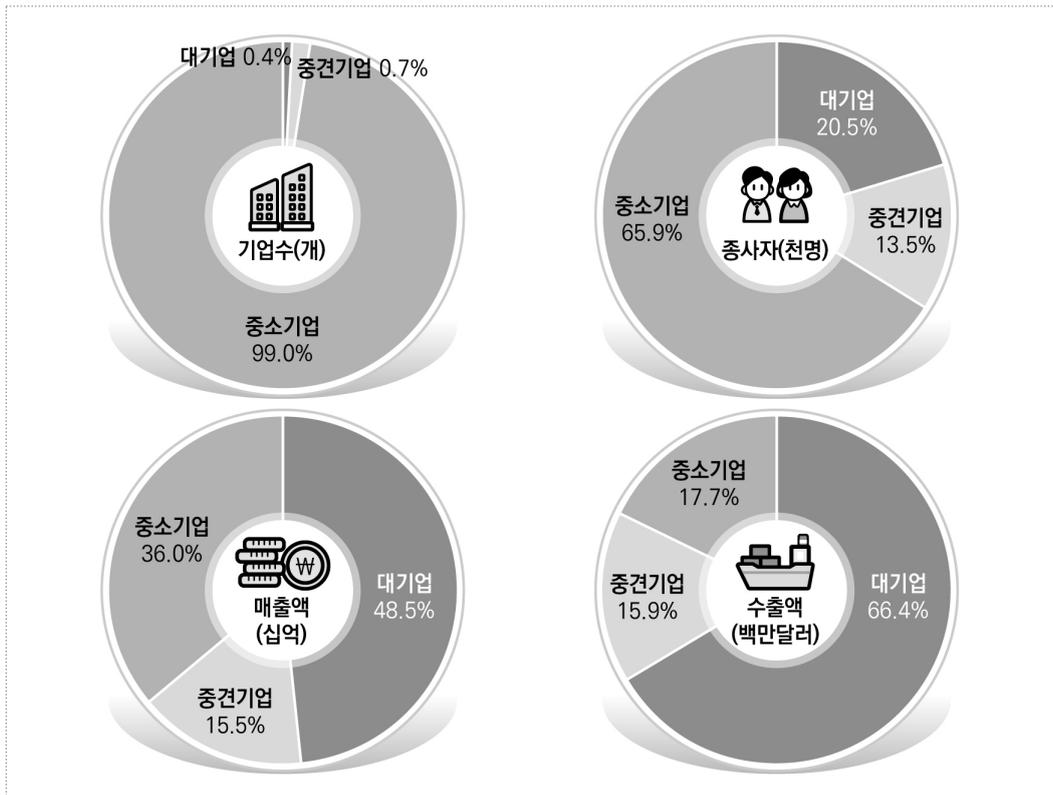
* 관련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 현황

가. 중견기업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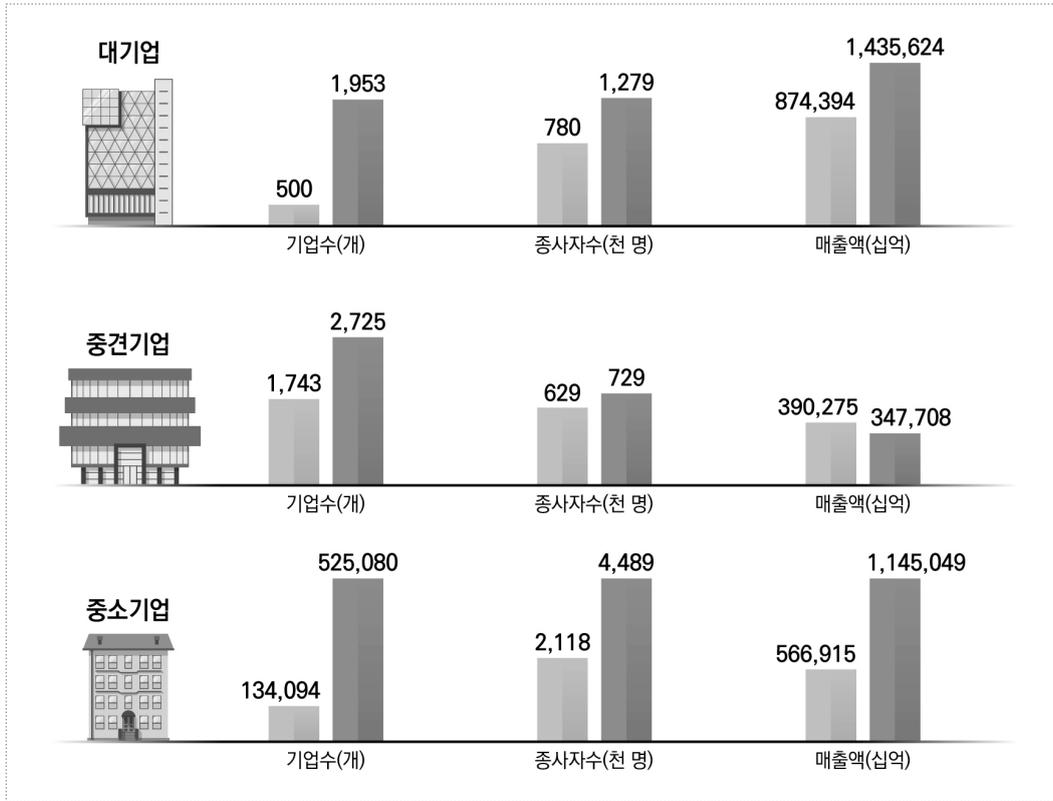
- 중견기업 주요지표는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및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주요 항목 현황〉



기업규모	기업수(개)	종사자(천명)	매출액(십억)	수출액(백만달러)
대기업	2,453	2,060	2,310,017	380,302
(구성비,%)	0.4	20.5	48.5	66.4
중견기업	4,468	1,358	737,983	90,895
	0.7	13.5	15.5	15.9
중소기업	659,174	6,608	1,711,964	101,396
	99.0	65.9	36.0	17.7

〈기업규모별·산업별 주요 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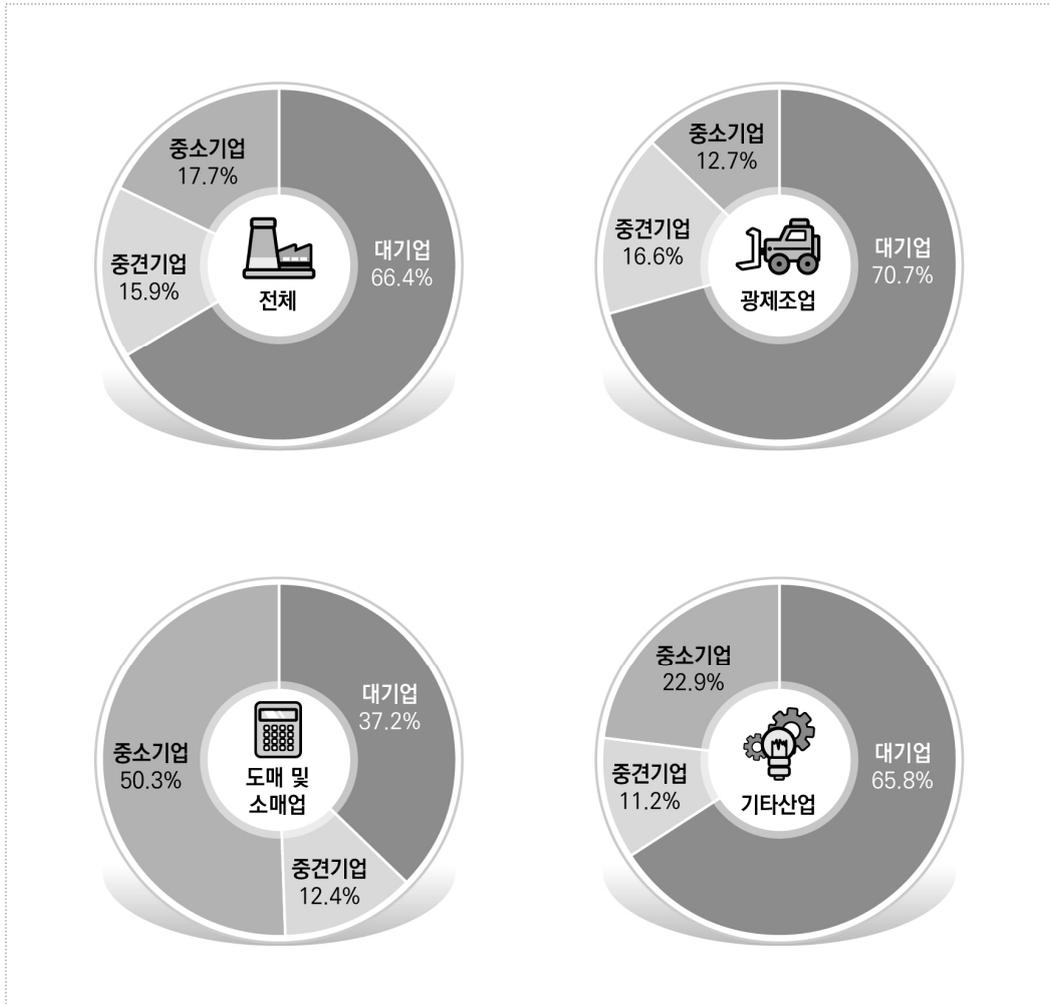


산업	기업규모	기업수(개)	종사자수(천명)	매출액(십억)
전체	합계	666,095	10,026	4,759,963
	대기업	2,453	2,060	2,310,017
	중견기업	4,468	1,358	737,983
	중소기업	659,174	6,608	1,711,964
제조업	대기업	500	780	874,394
	중견기업	1,743	629	390,275
	중소기업	134,094	2,118	566,915
비제조업	대기업	1,953	1,279	1,435,624
	중견기업	2,725	729	347,708
	중소기업	525,080	4,489	1,145,049
농림어업	대기업	21	1	554
	중견기업	36	2	1,000
	중소기업	11,356	31	8,284

산업	기업규모	기업수(개)	종사자수(천명)	매출액(십억)
광업	대기업	3	3	833
	중견기업	10	1	199
	중소기업	943	9	2,739
전기가스업	대기업	80	63	130,389
	중견기업	59	5	13,505
	중소기업	4,633	5	2,656
건설업	대기업	129	102	105,662
	중견기업	294	77	72,954
	중소기업	94,998	776	248,643
도소매업	대기업	364	236	232,713
	중견기업	650	140	134,083
	중소기업	166,604	938	523,892
운수업	대기업	119	132	77,676
	중견기업	239	49	30,975
	중소기업	26,209	429	64,434
숙박음식업	대기업	46	101	21,758
	중견기업	90	59	7,114
	중소기업	10,089	117	13,068
정보통신업	대기업	149	133	78,669
	중견기업	379	98	34,208
	중소기업	39,599	356	52,875
금융보험업	대기업	479	311	690,228
	중견기업	72	5	2,916
	중소기업	16,238	46	20,231
부동산업	대기업	297	31	51,650
	중견기업	322	32	25,067
	중소기업	45,854	187	70,157
전문과학기술업	대기업	104	26	13,194
	중견기업	197	48	8,959
	중소기업	50,188	452	54,872
사업서비스업	대기업	97	110	15,125
	중견기업	207	188	10,756
	중소기업	33,447	902	47,186
기타*	대기업	65	30	17,173
	중견기업	170	25	5,972
	중소기업	24,922	241	36,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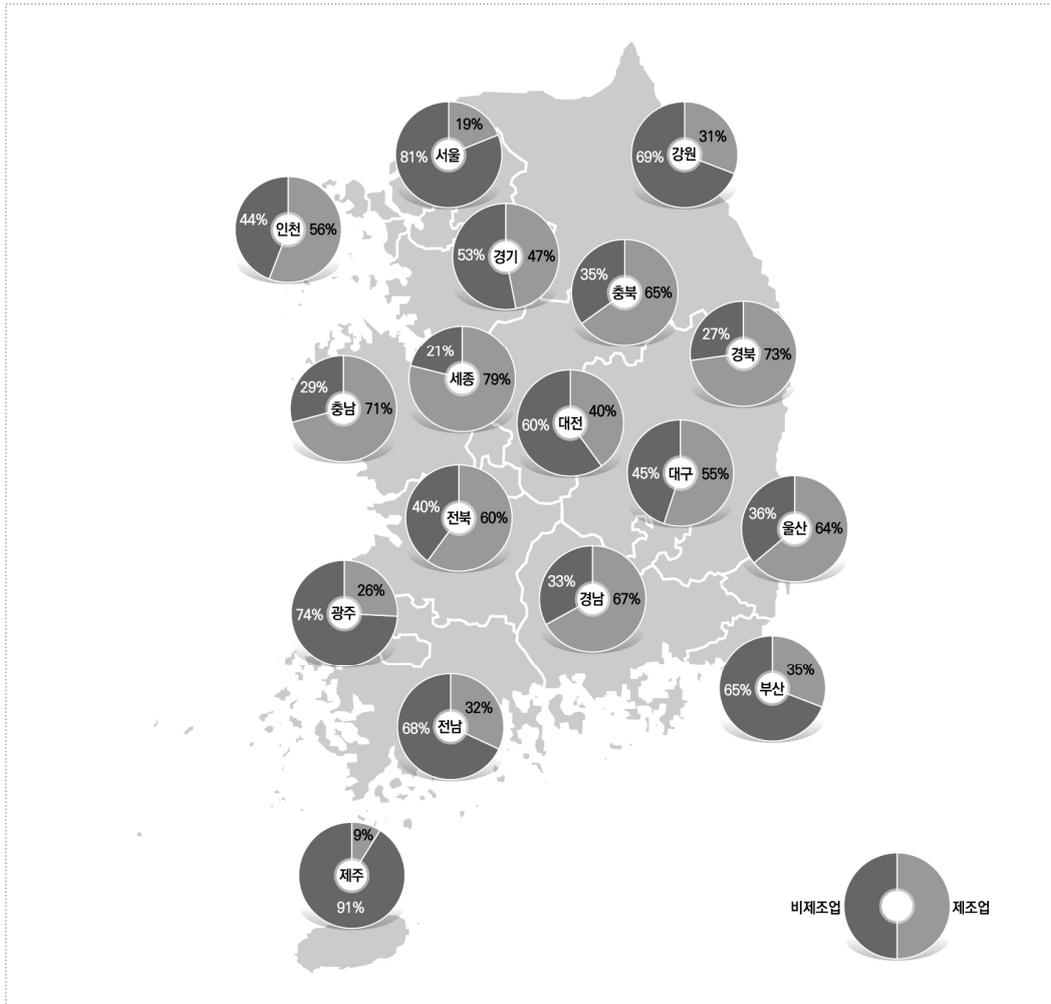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E, P, Q, R, S 산업

〈기업규모별·산업별 수출 현황〉



구분		전체	광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산업
수출액 (백만달러, %)	대기업 (구성비)	380302 66.4	340855 70.7	26117 37.2	13329 65.8
	중견기업	90895 15.9	79908 16.6	8713 12.4	2273 11.2
	중소기업	101396 17.7	61444 12.7	35306 50.3	4646 22.9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제조업	22	444	153	125	32	56	25	91	316
비제조업	50	500	77	47	92	46	38	168	1,367
합계	72	944	230	172	124	102	63	259	1,683
구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국
제조업	15	49	95	30	47	3	140	100	1,743
비제조업	4	28	76	63	31	29	56	53	2,725
합계	19	77	171	93	78	32	196	153	4,468

나. 중견기업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말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사 대상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조사 내용

- 조사는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투자현황, 금융 및 자금조달,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9개 부문 76개 문항으로 구성

□ 중견기업 특성

- 전체 중견기업은 4,014개 기업으로 일반 중견기업 1,795개(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개(55.3%)
- 업종별로는 제조업(1,552개) 38.7%, 비제조업(2,462개) 61.3%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60.6%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53.0%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41.0%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4%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6.4% 정도 차지함
- 중견기업의 18.9%는 상장기업이며 81.1%는 비상장기업임

□ 중견기업 특성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14)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	55.3
업종	제조업	(1,552)	38.7
	비제조업	(2,462)	6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0.7
	1백억원~5백억원미만	(1493)	37.2
	5백억원~1천억원미만	(509)	12.7
	1천억원~2천억원미만	(682)	17.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58)	8.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82)	7.0
	5천억원~1조원미만	(172)	4.3
	1조원이상	(89)	2.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5.9
	50~100명미만	(686)	17.1
	100~200명미만	(608)	15.1
	200~300명미만	(387)	9.6
	300~500명미만	(397)	9.9
	500~1,000명미만	(326)	8.1
	1,000명이상	(168)	4.2
업력	0~7년미만	(617)	15.4
	7~20년미만	(1644)	41.0
	20~30년미만	(679)	16.9
	30~40년미만	(459)	11.4
	40~50년미만	(340)	8.5
	50년이상	(275)	6.9
상장	상장	(757)	18.9
	비상장	(3257)	81.1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표(조사시점 : 2017년 기준)

구 분	전체	일반 중견기업	제조 중견기업
중소기업 회귀검토(%)	4.9	4.0	4.7
M&A 경험(%)	2.8	3.7	3.0
산학협력 실시 유무	12.4	20.1	23.7
산학협력기관(%)	대학(74.2) 국공립 연구기관(42.0) 민간 연구기관(19.1)	대학(79.5) 국공립 연구기관(40.3) 민간 연구기관(17.1)	대학(71.4) 국공립 연구기관(43.0) 민간 연구기관(20.8)
기술이전처(%)	대학(57.2) 국공립 연구기관(32.4) 민간 연구기관(23.4)	대학(66.0) 국공립 연구기관(19.0) 민간 연구기관(33.5)	대학(65.7) 국공립 연구기관(24.7) 민간 연구기관(9.7)
정부 R&D 경험(%)	평균 2.8건, 미경험비율89.7	평균 3.1건, 미경험비율82.5	평균 2.7건, 미경험비율77.7
'18년 R&D 투자금액 (계획, 억원)	총 74,547 (평균 50.6)	총 68,521 (평균 72.9)	총 66,912 (평균 64.8)
'18년 설비투자 금액 (계획, 억원)	총 21조 5,283 (평균 93.1)	총 18조 3,132 (평균 140.0)	총 12조 8,481 (평균 100.6)
설비투자 비중(%)	기계장치(47.7) 건물 및 구축물(16.3) 토지(7.4)	기계장치(46.0) 건물 및 구축물(18.7) 토지(9.0)	기계장치(66.0) 건물 및 구축물(13.9) 토지(3.9)
자금조달원(%)	내부유보자금(70.7) 시중은행(22.7) 정부정책자금(1.7)	내부유보자금(62.2) 시중은행(28.8) 정부정책자금(3.1)	내부유보자금(65.2) 시중은행(26.6) 정부정책자금(3.2)
평균 근로자 수(명)	270.4	508.3	339.8
평균 신규 채용(명)	63.6	83.1	45.1
수출 실적 비율(%)	32.6 (직접 76.2/간접 23.8)	51.1 (직접 76.0/간접 24.0)	65.1 (직접 74.9/간접 25.1)
현지법인 설립 기업(%)	48.5	63.9	50.7
수·위탁 거래(%)	55.8	65.8	72.2
수탁거래 비중(%)	대기업(73.9) 중견기업(18.3) 중소기업(7.8)	대기업(76.5) 중견기업(16.1) 중소기업(7.4)	대기업(81.0) 중견기업(14.6) 중소기업(4.4)
기업승계 계획없는비율(%)	84.4	77.1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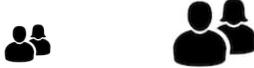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044-203-4367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103
- 중견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게시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

3. 중견기업 정책

- 중견기업 정책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18. 2. 5 관계부처 합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 2280	<p>“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 육성”</p> <p>-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 -</p> <p>* 월드챔프 1조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R&D 비중 3% ↑ or 수출 비중 30% ↑ or 매출액 성장률 15% ↑)</p>
--------------------	---

목표	<p>중견기업 수</p>  <p>(’15) 3,558개 → (’22) 5,500개 중소에서 중견으로의 성장을 촉진</p>	<p>중견기업 고용인원</p>  <p>(’15) 115만명 → (’22) 151만명 혁신성장·상생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규 13만 + 확대 23만)</p>
-----------	---	--

추진전략	정책과제
1. 글로벌 수출 기업화 촉진	①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 ② 기술혁신 역량 확충 ③ 신사업 창출 기반 조성
2.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①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② 전문인력 확보 지원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② 업종별 특화 상생협력 추진 ③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 확산
4.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① 성장디딤돌 강화 ② 중견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정책 방향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 공정한 성장 생태계 조성”	
	■ 혁신성장 측면	
	기업중심 분절적 지원	산업정책 연계 통합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정책
	내수 중심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 * R&D·수출·인력 등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
	■ 공정생태계 측면	
	대기업 의존형	독립형 성장 생태계 조성 * 대기업 의존없이 성장하고 강한 교섭력을 갖춘 독립형 중견기업
	수도권 중심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 거점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 상생·공정거래	중견기업 중심 상생 * 원청·협력형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한 포용적 산업생태계
	■ 성장단계·유형별 맞춤형 지원	
		특징
초기형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혁신역량 취약	• 성장디딤돌 강화, 정책자금 확대 • 맞춤형 R&D·마케팅·인력 지원
혁신형	- R&D·수출 비중 증가 - 고성장 잠재력 보유	• M&A 활성화, 수출 등 패키지 지원 • 지역거점 중견기업
내수· 전속형	- 내수시장 중심 - 대기업 의존적	• 신사업·신시장 진출 및 사업다각화 지원 • 대·중견·중소 동반성장 촉진
글로벌형	- 매출 1조원 이상 - 글로벌 경쟁력 보유	• 현장애로·규제개선 지원 • 사회적책임 경영문화 확산

4. 중견기업 지원기관(중견기업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

주요업무 : 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총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안내 및 문의 : www.motie.or.kr / 1577-0900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관소개 : 중견기업을 위한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정책건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fomek.or.kr / 02-3275-2985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번	연합회 회원사 가입	5번	기술·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2번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6번	M&A 및 명문장수기업센터
3번	제도 및 정책 문의	7번	중견기업 홍보 지원
4번	일자리·고용지원 사업	0번	기타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투자진흥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otra.or.kr / 1600-7119

-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소개 : 무역·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sure.or.kr / 1588-388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소개 :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at.or.kr / 02-6009-3000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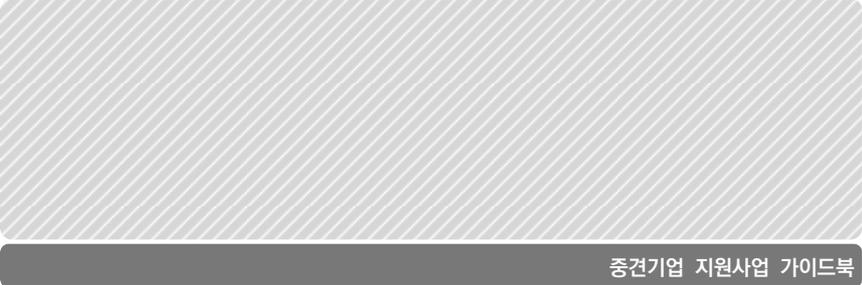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dp.or.kr / 031-780-211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tipa.or.kr / 1357 또는 042-388-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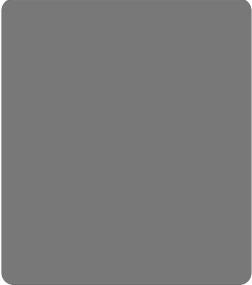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소개 :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정책자금 융자, 인력양성 사업지원 등 원스톱 종합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sbc.or.kr / 1357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II



중견기업 지원사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배정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선정된 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일정 군 복무 기간 동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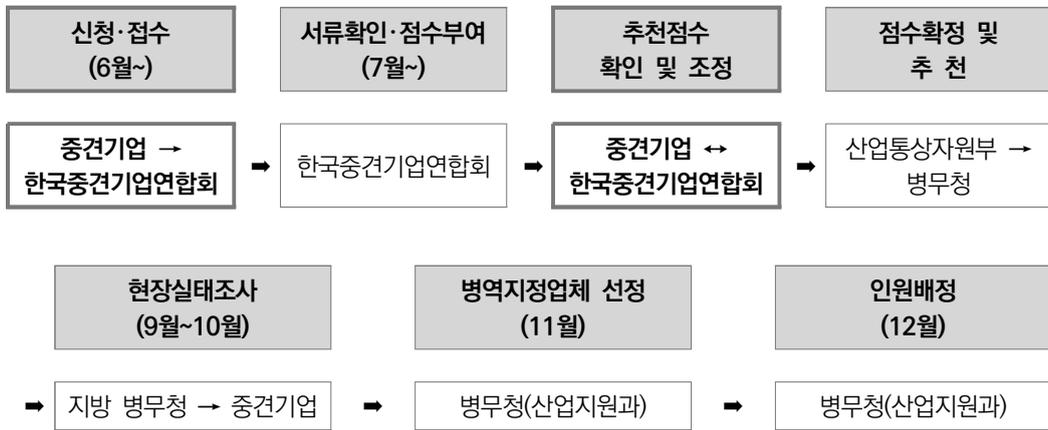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법인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 *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사업장)만 신청가능

분 야		요 건	
		공통사항	
공 업	제조업	※ 아래항목 모두 충족 ① 선정희망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②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업 ④ 제조·매출 실적 이 있는 기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시멘트·요업, 신발, 생활용품 업종
	통신기기		• 통신기기 제조업종
	정보처리관련업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S/W개발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S/W개발 실적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공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6월 중
- 신청방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04151)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74(대흥동, 상장사회관) 4층



❖ 문의

- 신청접수 및 추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985)
- 병역지정업체 선정, 인원배정 : 병무청 (042-481-28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일학습병행 도입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 지원개요

-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스스로 양성, 활용하기 위해 청년취업 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컨설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 단, 월드클래스300, 명문장수기업, Best 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 전담기관 추천기업 등은 선별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일학습병행 도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제도 지원유형

산학도제형	특성화고 재학생 2-3학년 조기 채용, 현장중심 교육 지원
재직자형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 대상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지원

- 제도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인적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 내 기업현장교사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수당 지급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연간 1,600만원 한도)
	HRD담당자 수당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진행사항, 운영실적 보고, 정부지원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지급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연간 300만원 한도)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훈련실시기간동안 학습근로자 인건비 지원 1명당 매월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학습근로자 1명당 최대 월 40만원 한도
훈련비	OJT훈련비	일학습병행 기업이 실시하는 현장 훈련소요훈련비

- 컨설팅 지원 비용 : 전액 무료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1월 2일~11월 30일
- 신청방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메일 또는 FAX (전송 후 신청확인필)

❖ 문의

- 신청접수 및 추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98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지원개요

- 중견·중견후보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 육성 교육지원

❖ 지원대상

- 중견(후보)기업 및 재직자

❖ 지원내용

- 교육비 80%이내 지원

구 분	과 정	주요 내용
①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강화	▪ R&D실무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계획 등 R&D 기본 이론부터 실제 추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전문-심화단계 교육 지원
	▪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기업의 IP 인프라 관련 진단·분석을 통해 IP 역량 강화 및 현업 실무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방문형) 지원
② 지속성장 경영역량 강화	▪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무 교육을 통해 경영 리스크 최소화
	▪ 중견기업 글로벌 인재 육성	신규 입사자, 승진자, 해외 주재원 부임자(해외영업 담당자) 등 사내 역할전환을 요구받은 실무자가 새로운 임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신청(<http://academy.ahpek.or.kr/index.jsp>)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22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인재유입 인프라 구축

❖ 지원개요

- 중견기업 인식개선 캠페인, 캠퍼스 스카우트 등 인식개선 활동 및 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입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①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우수 중견기업에 인재확보를 위한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소개
②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수 중견기업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회사소개 및 채용계획 등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 개최
③ 중견기업 인식개선 홍보	우수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대국민 대상 중견기업 홍보
④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및 상담회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생 및 고교생 대상 인식개선 특강 및 상담 제공
⑤ 중견기업 전용 취업정보 코너	중견기업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채널을 구축하여 우수 중견기업 채용정보 홍보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1957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원개요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gambling 및 베팅업(91249)]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

-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교대제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일자리 순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3년)
-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 1~2%)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지원개요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모든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 지원개요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gambling 및 베팅업(91249)] 제외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5인 미만 기업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13명 (예산 181억원)
- 지원 수준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개요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 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 유연근무제 유형 :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7,600명 (예산 120억원)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 지원개요

-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업 35개소(예산 7억원)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직접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연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019년 기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근로자수 증가) '직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8만명 지원, 예산 6,745억원 (2019년 기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4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견·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과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2.09% (2019년 2분기 이율 기준, 분기별 변동)

※ 가입혜택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견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자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지원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4424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청년근로자, 중견·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 이상(세전)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견·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견·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가입혜택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견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자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지원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4424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투자의지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단,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 지원내용

-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2년형] 2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 ③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 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순지원금 100만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 [3년형] 3년 근속 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

간 7회 분할적립)

- ③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 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사업

❖ 지원개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중견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 지원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업)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지원절차

-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9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77
- 전국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특허청]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 지원개요

- 기획 R&D·제품생산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서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허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직원(경영진, R&D 연구인력 및 특허 관련 담당자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개 기업 선정, 기업당 약 500만원 상당(교육비 10%~20% 현금 부담)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및 경영실태, 역량 수준 등에 대해 전문가 진단 후 R&D 연구과제 등 기업 현안과제와 접목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지원
- 교육 프로세스
 - ① 준비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신청 공고 및 대상기업 선정
 - 기업 업종별 교육수행기관(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 선정(입찰)
 - ② 진단
 -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수준 진단 및 CEO 인식조사 등
 - 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관계자 일정 및 커리큘럼 협의
 - ③ 교육 커리큘럼 설계 문제해결중심의 교육
 - 진단 및 협의 결과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설계
 - 필요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적정성 등 피드백 실시
 - 커리큘럼에 따른 실무형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지원
 - ④ 평가/피드백
 - 교육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평가 실시
 - 교육 만족도, 역량향상도, 현업적용도, 지식재산 출원 증가율 등 평가

🌀 지원절차

- 지원 공고 : 2~4월 중
- 지원 기간 : 6개월 내외(6월~11월)
- 신청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전용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357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35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과정

❖ 지원개요

- 해외 분쟁사례 및 협상전략 중심의 전문강좌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공공기관, 출연연 및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
*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교육비 80%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전략 제시 등 실제 case-study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 지원절차

- 신청 기간 : 해당 교육일 약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IP Human Network(www.iphuman.or.kr) → “기업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357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 지원개요

- KOTRA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교육과정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란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수출 마케팅 역량강화 과정 -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의료의약, 패션의류, 식품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초보/유망/중견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연수 - 수출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CEO아카데미 등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배양 과정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실무, 국제비즈니스계약, 해외전시마케팅 등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동향 및 경제동향 연구, 선진국 인프라 체험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주재원 사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 강화 과정 - 현지 경제, 문화, 노무, 세무, 통관절차 등 실무 중심
업종별 FTA 활용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FTA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장품, 화학,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외국인투자유치 실무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과정

🌀 지원절차

- 신청 :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참고

🌀 문의

- KOTRA아카데미 : 02-3497-1182 / 042-338-1707(대전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 사업

사업개요

- 기술 문제해결 비용·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을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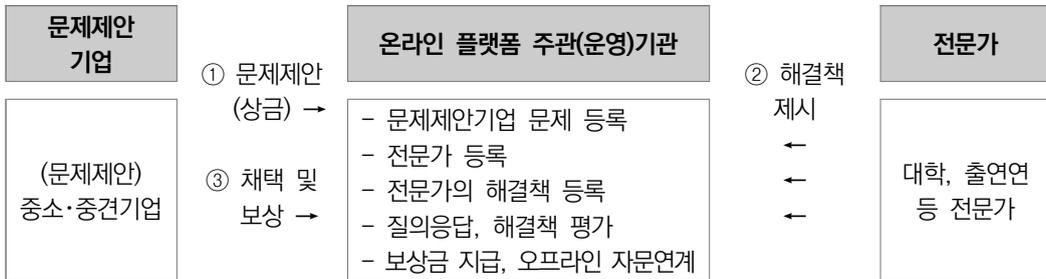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내용

- 플랫폼에 중소·중견기업이 의뢰한 기술문제에 대하여 대학·출연연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이 최적의 솔루션을 채택 후 보상금을 지급

〈플랫폼 운영체계도〉



사업 참여주체별 추진프로세스

- 문제제안기업



■ 전문가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 02-3275-2109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중견기업 기술탈취 근절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 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보안 진단 및 교육 포함)
 - 심화자문(최대 7일) : 비용의 75% 지원(최대 157.5만원)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전략 :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자문) 사전진단 결과, 심도있는 전문가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5, 6867, 4400, 447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보호 상담·자문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보안 진단 및 교육 포함)
 - 심화코칭(최대 7일) : 비용의 75% 지원(최대 157.5만원)
- 사전진단 :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정책 :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코칭 : 사전진단 결과, 심도있는 전문가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World Class 300 기업의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고용 등 4개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 전략을 기술
- 과제별 지원 규모
 - 지원금액/기간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최대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현금+현물)
 - * 2018년까지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 수행 World Class 300 기업 대상 지원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지원개요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초기 중견기업

❖ 신청자격

- 청년 석·박사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자('19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청년기준 : 만 19~39세)
- 기술전문 경력인 :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구분	①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②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석사	박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지원규모	30명	10명	10명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02-6009-35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 지원개요

- 초기 중견기업(주도) - 중소기업(참여) 컨소시엄의 신제품, 신기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산업 전후방간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여 상생협력 모델 확산

❖ 지원대상 : 초기 중견기업*(주관기업) - 중소기업(참여기업**) 컨소시엄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 참여기업 : 중소기업(필수) + 대학, 연구소

❖ 지원내용

- ① (개요)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①과제기획, ②R&D지원
 - 1단계 과제기획과 평가를 거쳐, 2단계 R&D 선정 및 본격 지원 추진
- ② (기획지원) 네트워크(컨소시엄) 구성, 성과배분 계약, R&D 과제의 기술성·시장성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전기획 지원
 - 지원내용/기간 : 컨소시엄(과제)별 3천만원/5개월
 - 필수사항 : 참여기관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등록
- ③ (R&D지원)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국내형) 및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글로벌형)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기간 : 컨소시엄(과제)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24개월

유형	① 국내형	② 글로벌형
지원 대상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추가 참여 가능	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선정 우대
특징	상생협력 중시	사업화 연계(수출) 중시

❖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16, 82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지방 중견기업의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전략 육성산업을 선도할 지역 핵심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사업 조건에 미달하는 중견기업 중 본사 또는 주요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8억원
- 지역대표중견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은 월드클래스 후속사업 요건 충족시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시 패스트트랙으로 우선선정하여 집중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핵심 R&D 과제 관련 기업에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지역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산-산 컨소시엄 구성 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중견기업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여건 조성
- 국비, 민간 매칭 재원을 통해 R&D 과제 지원(기업당 16억원), 지방비 매칭 재원을 통해 IP 전략 수립 및 스마트공장 지원 시책 연계
 - 지방비 최소 매칭 비율 국비(8억원)의 20%(기업당 1.6억원, IP 전략 수립 0.6억원, 스마트공장 지원 1억원)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 지원개요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 (최근 3개년 매출액)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지원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24, 913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www.koita.or.kr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www.rnd.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 지원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대상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견·중소·대기업
 - 대·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 가능

☉ 지원절차

-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선정 추천 → 선정 및 인원배정 → 결과 통보 → 전문연구요원 채용
- 기간 : 매년 상반기(1월 제출~4월 선정) 및 하반기(6월 제출~10월 선정)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24, 913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www.koita.or.kr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지원개요

-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및 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수혜를 받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기술보호 제한구역에 대한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기업 현장컨설팅(제안요청서 접수) → 신청기업-지원기관 매칭(제안서 접수) → 심사·선정(원가) →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 진도보고/점검 → 감리 → 완료보고 → 잔금 지급 → 사후 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등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76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및 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총 12개월 분, 최대 25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 등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74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 지원개요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 지원대상

- 신규과제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정부표준화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 국제표준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개발 중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계속과제
 - 상기 자격에 따라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바 있는 기업·기관으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 중인 기업·기관

❖ 지원내용

- 일반현황 분석 : 참여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 표준화 기구별 표준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499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 02-3475-8560

[특허청]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일부 감면

● 지원대상

- 중견기업

● 지원내용

감면대상자	감면율	감면대상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통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전담조직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4~9년분 등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년분 등록료

● 문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083

[특허청]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 지원개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4~6년차 등록료 일부감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인증기업 지원시책(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1점~5점)
 - 특허청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사업

❖ 지원절차

- 진행 절차

신청기업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등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 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8180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94, 28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 지원개요

-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지원내용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53-718-8114~5, 8283
-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참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지킴서비스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15User 라이선스 제공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or.kr)전송
-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 기술보호올타리 : www.ultari.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지원개요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125억 원(4,000개, 민간포함)
- 지원분야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 및 협동로봇·장비 등이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지원시스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

보지원을 하는 시스템(예, PLM)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구축 : 미 구축기업 대상 최초 구축 비용 지원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고도화지원 : 기 구축기업 대상 고도화 비용 지원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으로 편성

🔍 지원절차

- 신청 :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분(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상담센터 : 1644-173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기업지원실 : 042-388-0758,075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지원개요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을 위해 IP 전문가를 통한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원 내용
특허	예방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실용신안	대응	• (해외 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 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예방	•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대응	•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총사업비 : 약 23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 프로그램 구성

명 칭	지 원 내 용	지원 형태	과제 규모	과제 기간
기술개발형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R&D + 기술이전	실소 요액	11개월 이내 원칙*
사업화촉진형 지원	• 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 3년 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기술이전 + 기술지원	실소 요액	
문제해결형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 신기술·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30백 만원 이내	6개월 이내

* 필요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과 우편 중 택1 하여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이메일 : jskang@keri.re.kr
 - 우 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 부속서류 : 재무제표(4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신청기간 : 4월 경 기술상용화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및 선정평가 진행(예정)

❖ 문의

-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 055-280-1182, 1132

[한국기계연구원]

애로기술지원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한 주요 애로기술에 대하여 연구원의 인력, 기술, 장비, 재원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계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체계
 - 즉시해결 기술지원 : 2개월 이내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단기해결 기술지원 : 6개월 이내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세부지원 내용 : 담당 테크노닥터 지정 후 애로기술 해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 문의

- 한국기계연구원 기업지원실 : 042-868-7769

[IBK기업은행]

IBK차세대강소기업대출

❖ 지원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R&D과제 성공기업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차세대강소기업 : 기업은행의 'IBK차세대강소기업' 선정기업 • 성공기업 : '전문평가기관'이 추천한 R&D 성공기업,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전년 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USD 100,000불 이상 기업 • 일반기업 : IBK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 지원내용

- 상품한도 : 6,000억원
- 대출한도

구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차세대강소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 우대사항

구분	IBK차세대강소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연 1.0%p 이내	연 0.5%p 이내	연 0.3%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 문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6322-5333

[IBK기업은행]

IBK강소기업대출

❖ 지원개요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문	대상기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문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조사

☉ 지원개요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미포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2~3개사) * 先 입금 후 사전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만원/1항목 (예: 수요동향+경쟁동향= 300,000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만원(3~5개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확인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 6개사까지 무료 * 추가시 건당 1만원 부과

☉ 지원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온라인 신청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9일) → 조사 시작(3주)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7/7213/7349/7155/73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지원개요

-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이며,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역량 분석 : 기업의 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 * 성장 단계 : 초보내수→성장내수→유망내수→글로벌초보→글로벌유망→글로벌선도→글로벌강소
 - * 8개 역량 : 비전/마인드, 인력 및 자금, 인프라, 의사소통, 판촉/마케팅,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 시장성 정보(해외시장 빅봇 연계) : 국가별 시장성(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수출입 동향 등 안내
- 지원 사업 안내(해외시장 빅봇 연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수출유관기관 사업 추천

❖ 지원절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 답변 → 분석 정보 확인(역량, 시장, 지원 사업) → 1차 유선상담(수출전문위원) → 2차 방문컨설팅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상담회

☉ 지원개요

-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 가능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고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 지원

☉ 지원절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 (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객센터 : 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력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유망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맞춤형 패키지로 기업 수요 및 역량에 따른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지원대상

- 해외 수출을 선도할 유망 중소·중견기업 40개사
 - 기간제조(전력기자재, 조선, 해양기자재) 기업 20개사
 - 소재부품(자동차부품, 기계, IT/전자, 항공부품) 기업 20개사
 - * 자율주행, 전기차, 드론, 산업용로봇 등 4차산업 관련 기업 선정 우대

❖ 지원내용

- 운영방식 : 연간 유료 회원제(참가비 : 기업당 300만원)
- 참가 우대
 - KOTRA 주관 설명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지역별·산업별 대표사업 참가 우대
- 포인트 지원(사업비 차감)
 - KOTRA 해외 무역관 등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로 서비스는 제공을 하나 실제 경비 지출은 없는 경우로 서비스 제공시 연간 지원예산(포인트) 차감
 - 최대 200만원(200만 포인트) 한도 내 지원
- 비용지원(KOTRA 직접지출)
 - 해당 사업추진 소요경비 실비를 대상국 무역관 통해 지출
 - * 참가업체에 사업비 직접 지출은 불가, 무역관을 통한 지출만 가능
 - 직접 지출은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건당 지원 상한은 500만원
 - * 개별 방한 바이어 초청의 경우 KOTRA 운영 지역별 항공임 실링 내 실비 50% 지원 (이코노미 기준)

문의

- 산업분야별로 상이
 - 조선해양기자재 : 02-3460-7763 / mgk1126@kotra.or.kr
 - 전력기자재 : 02-3460-7761 / jaj0624@kotra.or.kr
 - 기계 : 02-3460-7634 / keemh@kotra.or.kr
 - 자동차부품 : 02-3460-7664 / dhkim94@kotra.or.kr
 - 항공부품 : 02-3460-7650 / minyoungiang@kotra.or.kr
 - IT·전자 : 02-3460-7654 / kj.park@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 지원개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선정 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정부기관 인증서 등), 전시적합성 등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 전시품 운송비 : 편도 해상 운송비 1CBM 한도 100% 국고지원
- 행정서비스 :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정지원(디렉토리 제출, 출입증 신청 등), 한국관 협력사 선정(장치, 운송, 여행)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통역원 주선, 사후관리 등

❖ 지원절차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 사전 마케팅 지원(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관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팀
 - 02-3460-7297 (건축자재, 자동차조선)
 - 02-3460-7275 (일반기계, 첨단융합)
 - 02-3460-3331 (정보통신, 섬유패션)
 - 02-3460-7286 (정보통신, 전기전자)
 - 02-3460-7291 (생활소비재)
 - 전시회 정보는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참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개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시 KOTRA가 부스비, 장치비, 해상편도 운송비, 주최사 제공 공식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기업당 최대 연간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기본 지원내역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해상(항공) 운송비(1CBM/부스), 주최사 제공 공식 해외마케팅 비용
 - 항공임,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 전시마케팅 지원
 - 현장지원 : 현지무역관이 개최기간 중 전시장 방문 및 애로사항 조치
 - 오프라인 지원 : 전시마케팅교육 제공(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공동개최)

❖ 지원절차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사업신청(2월(上),6월(下)) → 서류 심사평가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팀 : 02-3460-7287, 7256, 7285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www.gep.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우수상품전

☞ 지원개요

-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등
- 지원내용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 참가비 : 1부스당 110만원(VAT 10% 포함)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전시팀 : 02-3460-7262, 727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 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 지원내용

구분	기간	지원내용(잠정)
진입	6개월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제품 수출가능성 점검, 현지 코디네이션
발전	1년	• (수출 및 성장지원) 신규거래선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 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등
확장	1년	•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IP등록,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

- 참가비(잠정)
 - 진입단계 : 500,000원
 - 발전단계 : 2,500,000원 - 3,500,000원(지역별 상이)
 - 확장단계 : 7,000,000원 - 10,500,000원(지역별 상이)
 - *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홈페이지 참조(www.exportvoucher.com/jisahwa)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서비스 개시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02-3460-7446, 742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 055-751-9679, 9676, 9674
-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사화사업팀 : 031-927-92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월드챔프

❖ 지원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월드챔프),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중견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

❖ 지원내용

- 기업별 로드맵에 따른 1:1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 해외마케팅 자문 및 해외무역관의 현지 해외마케팅 실행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지원기업 17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 지원요건

- 월드챔프
 -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 Pre 월드챔프
 - 대상기업 : 사업재개편 승인기업, 정부R&D과제 선정기업, 세계일류상품 기업, ATC 선정기업, 정부정책(U-Turn, 개성공단 등)사업기업, 지방우수강소기업 (해당증빙서류 필요)
 -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 *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50억원 이상
- Post 월드챔프
 - 대상기업 : 기존 월드챔프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

❖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51, 72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요건

- 대상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제출 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가능(매출액 증빙 제출 必)

〈우대 사항〉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시 가점 부여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지역) 사업 계획 보유 기업 우대
- 내수 중견기업(직전년도 수출 실적이 매출액 대비 5% 미만 또는 500만불 이하), 세계일류 상품 생산 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사 선정 시 우대
- 고용 증가기업 우대

❖ 지원내용

- 기업별 로드맵에 기반한 수출전문위원 1:1 컨설팅,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통한 현지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지원기업 10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7,500만원 (보조율 50%)

❖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홈페이지 신청 :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27, 72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IT지원센터

☞ 지원개요

- 국내 ICT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 밸리, 베이징, 도쿄)에 IT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정보통신(ICT)분야 수출역량 및 기술경쟁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현지 사무공간(입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 지원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 1차 서류심사 (ICT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IT분야 중소, 중견기업) →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 사후관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CT·성장산업실 : 02-3460-74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 12개 해외무역관을 서비스 거점으로 지정하여 서비스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간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방식 : 서비스기업이 진출희망하는 지역을 서비스거점으로 선택, 서비스거점 전담 직원이 담당 기업의 시장조사, 파트너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참가비 : 서비스거점당 250만원 (수출바우처로 결제 가능)
- 서비스거점
 - 중국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 일본 : 도쿄, 오사카
 - 미국 : LA, 뉴욕
 - 동남아 :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 *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성 있음

❖ 지원절차

- 사업공고(1월)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2월) → 서비스 개시(3월~)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 지원개요

-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달 전문기업 1000개사 육성을 지원

☉ 지원대상

- 국제기구과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수출기업 1000개사 (KOTRA 500개사, 조달청 500개사 선정)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해외마케팅 역량(70%) + 재무건정성(30%)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벤더등록 지원, 해외조달시장 정보, 입찰보증 한도확대/금리우대/자금지원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 제공

☉ 지원절차

-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안별 지원 → 점검 및 평가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 : 02-3460-749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실비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10개사

❖ 지원내용

- 참가 기업별 타깃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실비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 참가비용 : 3백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p300@kotra.or.kr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 : 02-3460-749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지원(Global Partnering)

☞ 지원개요

-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

☞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분야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원, 기술 교육 등)
-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 개최

☞ 지원절차

-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국내 기업 조사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플랫폼 운영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팀 : 02-3460-32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지원개요

-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사후지원(2개월)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상담 • 참가비 : 50~70 만원(3~4개사) + 부가세(10%)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상담지원(통역 및 차량지원)+사후지원(2개월) •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직원이 상담지원 • 참가비 : 100~140 만원(3~4개사) + 부가세(10%)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상담 • 참가비 : 50~70 만원(2~3개사) + 부가세(10%)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 상담지원(통역, 차량지원)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참가비 : 100~140 만원(2~3개사) + 부가세(10%)

❖ 지원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출장지원 가능시 對고객 건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 출장시행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 지원개요

-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 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하며, 물류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영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현지 무역관과 제휴된 복수 물류창고 보관 면적 제공
 - * 통관, 재고관리, 추가 면적 임차, 입출고, 운송 등 기본창고 면적 제공 외 물류서비스 이용료는 사업 참가기업이 현지 물류기업과 직접 청산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 및 현지 최적 물류수단 등 컨설팅 제공

〈공동물류센터 운영무역관 12개국 22개소〉

지역	공동물류센터 운영 무역관	연간 참가비 (VAT 포함)
북미(6)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밴쿠버, 토론토	5cbm : 50만원 10cbm : 100만원
일본(1)	도쿄	
대양주(1)	멜버른	
중국(7)	홍콩	5cbm : 30만원 10cbm : 60만원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정저우, 항저우, 시안	
유럽(3)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브뤼셀	
동남아(1)	호치민	
CIS(1)	알마티	
중남미(1)	파나마	
중동(1)	두바이	

❖ 지원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신청 → 시장성 및 수용여력 검토 → 본사승인 및 납부안내문 송부 → 입금 및 입금확인 → 협약서 체결 → 사업개시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02-3460-7429, 74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M&A 진출 지원

🌐 지원개요

-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전략수립) 팀 내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매물기업 발굴
 - (딜 실행) 매물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 지원절차

- 참가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팀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A팀 : 02-3497-11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소비재 해외 유력 유통채널을 활용, 5대 소비재 분야별 선도기업의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해 한국 소비재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비재 분야(화장품,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헬스케어)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 기업분담금 30% 1,233만원(2,877만원 국고지원으로 4,110만원의 매칭펀드 구성)
- 해외마케팅 로드맵 수립 및 수행기관 통한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에 등록된 민간수행사 통한 기업별 수출마케팅 진행
 -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KOTRA 해외무역관의 밀착지원을 통한 현지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 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재전자상거래실 : 02-3460-77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서비스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콘텐츠, 교육,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SW, 핀테크 등) 중소·중견기업 30개사

❖ 지원내용

- 바우처 : 기업 당 3,000만원(국고지원 2,100만원, 70%)
- 시장조사 → 거래선 발굴까지 KOTRA 해외무역관 또는 민간 외부 수행기관을 통한 1:1 연간 마케팅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 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국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제조사 등 신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실비 지원, 각종 정보조사 등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새로운 제품과 방식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 지원내용

- 참가 기업별 수요에 기반한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해외마케팅 실비 지원, 각종 정보조사 등 기업당 1천만원 상당의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rana@kotra.or.kr
-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 자료 등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서비스팀 : 02-3460-73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 첫걸음 지원

❖ 지원개요

- 내수·수출중단기업 대상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 18년도 관세청 기준 수출실적 “0”인 업체(샘플 수출실적 보유기업도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 바우처한도 : 기업 당 2,000만원
 - 국고 : 1,400만원(보조율 : 70%), 참가기업 자부담 : 600만원(30%)
- 추가지원 : KOTRA 수출전문위원이 참여기업에 메뉴판 활용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멘토링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 심사(2배수 선발) → (2차)현장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사회적 기업, 신남방·북방 진출 예정기업, 고용 증가기업 각 2점 가점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소재 기업 10%(20 개사) 쿼터 할당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첫걸음팀
 - 사업신청 : 02-3460-7544, phlee@kotra.or.kr
 - 사업내용 : 02-3460-349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불 미만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KOTRA·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KOTRA : 2019export@kotra.or.kr 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송부
 - 무역협회 : export2019@kita.net 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송부
 - * KOTRA, 무역협회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둘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업 중 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수출역량, 연속참가

이력 등)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수출전문위원 매칭 및 현장평가 : 매년 2월 이후
 -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출전문위원 서류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및 지원 개시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538, 3274, 7775
- 한국무역협회 : 02-6000-567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사절단

☞ 지원개요

- 국내 프랜차이즈 중견·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사절단' 참가 시 현지 파트너 발굴, 현지 간담회 참가, 교통편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국·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중견·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상담회 : 프랜차이즈 파트너 상담주선(마스터, JV, 국제가맹)
 - 시장탐방 : 현지 한류타운 조성을 위한 중요상권 탐방
 - 전략세미나 : 현지 시장동향 발표 및 Q&A
 - 신청분야 : 이·미용, 스킨케어, 약세사리, 한식, 분식, 패스트푸드, 디저트 등
- 지원내용
 - 현지 파트너 발굴 및 매칭
 - 현지 출영송 교통편 지원
 - 호텔 예약
 - 현지 간담회 개최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otcoff22@kotra.or.kr
 - * 발송 후 유선 확인(02-3460-7613) 필수
 -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증문·영문 카달로그 및 홍보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3

[관세청]

YES FTA 컨설팅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최초 수출(예정)기업 FTA 수출
 - 최초 수출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통관 및 환급, FTA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타기관 무역지원 정책 안내 등 종합 지원
-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
 - 모의검증 실시, 관련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등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품목분류, FTA-PASS 정보 입력 및 활용, 증빙자료 관리 등

☉ 지원절차

- 신청 절차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행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e-mail 제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신청 시기
 - 사업공고 : 1월 중
 - 접수기간 : 2월 중

☉ 문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042-481-3282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 지원개요

-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일반형 기준)

구분	내용	특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 보험료

- 일반형 : 보험료율 = 기본요율 × (1 - 중소기업·중견기업 할인율*)
- 옵션형 :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을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을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지원절차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 지원개요

- Mobile-K Office 운영강화,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종합·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사업명	지원 개요
Mobile-K Office 운영 강화	• Mobile-k Office 운영 강화를 통해 FTA 체결 지역 및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 확대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 소비재 분야 등 FTA 수혜품목 대상 무역보험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명품화 촉진
종합·전문무역상사 활용	• 현행 종합·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 내수기업의 FTA 지역 수출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Mobile-K Office 운영 강화	• 한도책정, 신용조사 등 Mobile-k Office 운영 강화하여 FTA 체결 지역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해당지역 수출기업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유망 소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종합·전문무역상사 활용	•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지역 등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 우대지원* * 단기수출보험료 최대 40% 할인 및 부보율 우대	종합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업체분담금	없 음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www.ksure.or.kr) 혹은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접수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 02-399-6830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 수출 총력지원 보험료 할인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 총력지원을 위해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를 할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의 기간 내 선적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통지 건

☞ 지원내용

-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지원내용
 - 기본 할인율 :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30%
 - * 다만, 총력지원 할인율과 기타 할인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유리한 할인율 적용
 - 할인 총액 : 기업별 연간 총 할인 한도 1억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상담 후 접수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미중 무역분쟁 관련 우대지원

❖ 지원개요

- G2 무역분쟁 본격화에 따라 수출 애로 및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G2 무역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수출애로기업 : G2 수출실적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 수출피해기업 : G2 수출실적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및 G2 무역분쟁에 따른 현지 바이어와 계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지원내용
 - 해외 판로 지원 : G2 이외 국가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한도 책정 우대(최대 1.5배 이내) 및 보증 연장 시 감액 유예
 - 신속 보상 : G2 소재 수입자의 무역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보험금 가지급(최대 80% 이내)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컨설팅

❖ 지원개요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이행에 따른 대외위험을 사전에 제거·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문분야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수수료 : 무료
- 컨설팅 분야

분야		주요 내용
무역 보험	수출금융 조달	•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등 Trade Finance 활용방안 • Loan Portfolio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
	수출채권 관리	• 거래수입자 신용위험 관리 • 수출계약·결제조건 분석 및 대금미회수위험 관리 • 클레임 등 무역분쟁 관리기법
	환위험 관리	• 환위험 헤지 방안 • 환율동향 및 전망
	무역보험 활용방안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수출관련 금융조달을 위한 보증 및 보험제도 활용방안 • 보상 및 해외 채권추심
금융	• 정책자금 안내, 재무현황분석,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수출입	• 원산지 증명, 수출판로 개척, 수출계약, FTA 활용 등	
법무	•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등	
회계(세무)	•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 검토 등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이용절차 : 신청서 접수 → 컨설턴트 안내(이메일) → 방문일정 협의 → 컨설팅 내용 사전분석 →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사업실 : 02-399-5322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Plus+보험

☞ 지원개요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

☞ 지원대상

-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보험료 1회 납부로 1년간 최대 3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 중견기업 보험료율 : 수입자 위험의 경우 1.0%(수입자위험 30만불 담보시 보험료는 3천불)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처리 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 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개요

-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충전 및 파생 서비스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 정부지원금 : 총 255백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85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50~80% 이내(중소 80%, 중견 50%)

❖ 지원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 동시에 사업계획서 원본은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양식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e나라도움에서 다운로드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남전빌딩 813호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을 종합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 관련 업체 등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 지원내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 이내 지원)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1.95억원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지원규모 : 9.05억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4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규모 : 19.58억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사업명	제출처	주소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해외진출지원팀)	(44538)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사업담당자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신재생국제협력팀)	(06143)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 남전빌딩 비즈스퀘어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사업담당자
해외시장개척 지원		

-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개요

-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관세법인 소속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또는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및 비관세장벽(인증, 지적권 등), 수출 절차 및 마케팅 등 기업체 방문 컨설팅 제공
- 지원 기간 : 매년 3월~11월
- 지원 규모 : 약 120개사
-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10일(MD) 컨설팅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400만원
업체분담금	< 전년도 매출액 기준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 지원절차

- 신청·지원 :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선정 → 컨설팅 수혜
 - 홈페이지(www.kita.net, fta1380.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 목표기업 수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기업 선정

■ 지원 우선순위 업체

-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및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 ③ 농수축산물, 섬유, 화장품,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
- ④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 신청 시기 : 상반기 공고 (2월 예정)

❖ 문의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해외건설협회]

신시장 개척지원

● 지원개요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지원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공종인 경우
 - 직전년도 지원사업이 있는 기업인 경우, 예산 집행률 60%이상인 기업인 경우
 - 국내기업의 하도급이 아닌 경우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 대기업 및 공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단독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 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프로젝트

❖ 지원금액 및 비율

- 지원금액 : 각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중소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및 공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30%

❖ 문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02-3406-1103, 1060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 지원개요

- 중견·중소건설 업체의 신규 채용인력 등에 대한 해외건설 훈련 지원으로 청년채용 확대 및 해외건설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우선선정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자, 결혼이주자

☉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참여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최대 18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 훈련비용 : 8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40만원/인, 월 지급
 - 단,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원 채용 기업 추가 지급

■ 지원인원 : 20명 이내

- * 단,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외국기업에서 하도급받는 경우도 포함)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명까지 가능
-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여 OJT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사업 기 참여자는 지원대상 제외

 문의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02-3406-1033, 1091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 지원사업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내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대리신고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②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기업
 - 출원신청서/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사이트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개

번호	사이트	주소
1	타오바오	www.taobao.com
2	티몰	www.tmall.com
3	티몰글로벌	www.tmall.hk
4	1688	www.1688.com
5	알리바바	www.alibaba.com
6	알리익스프레스	www.aliexpress.com

■ 지원내용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 연간 최대 3회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요 기간	비고
모니터링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약 1.5개월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분석정보(신고가능·불가능 사유 등) 제공		
대리신고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화신	약 1.5개월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통한 신고 접수		
	•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익제기 대응		
사후관리	• 신고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약 1개월	연 1회
	•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 지원규모 : 1차 지원기업 24개社 선정
 - 연간 총 40개 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kipraglobal@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02-2183-588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 개발 사업

❖ 지원 개요

-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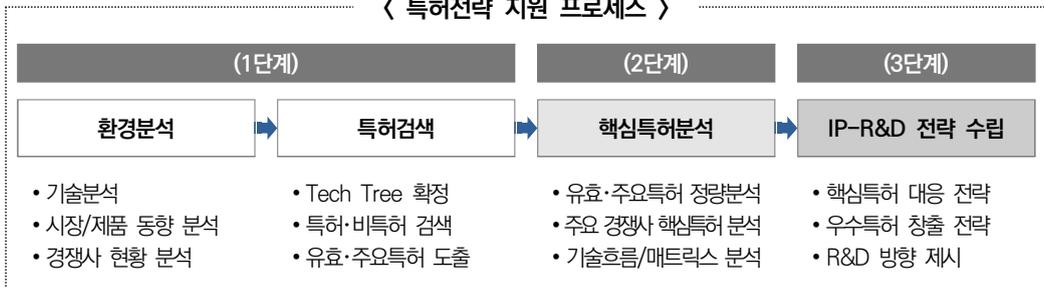
❖ 지원 대상

-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연구개발 초기부터 쏘세게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기업 특허를 회피하면서 공백영역의 우수 IP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 제시
 - (특허전략지원) 개발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특허전략 지원 프로세스 〉



- (신제품 창출형)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히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특허·디자인·브랜드 토탈 IP-R&D 전략 지원
- (제품-서비스 융합형) 제품에 관한 특허·디자인 전략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신성장 서비스에 관한 IP 전략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지재권전략 전문가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견·중소기업의 R&D 현장에 맞춤형 지재권 확보 전략 지원

* 특허정보 분석기관, 제품디자인 개발기관, UX/UI 디자인 개발기관, 브랜드 개발기관 등

🎯 지원 절차



🎯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성장팀 : 02-3287-423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

❖ 지원개요

-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데이터 기술 현지화 및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을 지원

❖ 지원대상

- 데이터 기술 현지화 지원 :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중소·중견 기업
-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데이터 기술(솔루션,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데이터 기술 현지화 지원 : 기존 데이터 기술(솔루션, 서비스 등)의 수출 상품화를 위한 설계·개발·테스트·현지검증 등 지원
 -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자료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 지원금
 - 데이터 기술 현지화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 민간부담비율
 -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의 경우 75%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60%이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26%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broad@kdata.or.kr
-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

문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2-3708-5373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개요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최종 선정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기업의 니즈와 역량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플랜을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생산→해외판매” 등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 지속적인 사후관리
 - 매년 후보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취소 등
- 히든챔피언 인증(졸업)
 - 히든챔피언 인증가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다면평가(EPIC)**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히든 챔피언으로 인증(우대지원 5년간 유지)

* ①수출액 3억/1억/0.5억달러 이상, ②육성기간 3년이상, ③회사존속 10년이상, ④신용등급 P4+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다면평가(EPIC) : 탁월한 성과(Excellence), 성장잠재력(Potential), 자립도(Independency), 국가경제기여도(Contribution)를 다면적으로 평가

🔍 지원절차

■ 기업신청 → 기업심사 및 후보기업 선정 → 마스터플랜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지속적인 사후관리 → 히든챔피언 인증(졸업)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신부점 및 출장소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 및 후보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02-3779-6307

[한국수출입은행]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①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약정제결(대출승인시점) → 대출집행 → 통화전환 요청(만기 1개월전까지) → 옵션행사/통화전환 → 대출상환(전환통화)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 한도거래신청(신청서 제출) → 한도승인 및 약정제결 → 선물환거래 신청 → 선물환계약 체결 → 계약이행

■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문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02-6255-5712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지원개요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지원개요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원(중소기업 400억원) 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수입금융(수입자금)

❖ 지원개요

-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금금액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 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만기 일시상환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우리은행]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 Middle To Great 기업자유예금

- 개 요 : 중견기업 전용 입출식 금리우대 통장 출시. 단기유동자금에 대한 혜택 강화
- 한 도 : 1조원
- 대 상 : 우량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추천 업체 등)
- 금 리 : 최대 0.5% (기본 0.1% + 우대 0.4%)

(19년 상반기 中 출시 예정)

🎯 CUBE론-X

- 개 요 : 스마트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한 도 : 1.5조원
- 대 상 :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BB+ 이상인 예비 중견기업, 우량 중견기업
- 금 리 : 산출금리 대비 1.5% ~ 2% 수준의 대출금리 우대

🎯 무소구 L/C 포페이팅

- 개 요 : 수입업체의 지급 불이행에 대해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무소구 조건 상품 출시. 우량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 대 상 : 수출 중견기업 (당행 등급 BBB 이상 외감기업)
- 특 징 : 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 대해 인수통지 접수시 무소구 전환 (차입금 미계상)

❖ 혁신 성장 펀드

- 개요 : 단순 대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발굴 → 투자 → 육성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
- 규모 : 3조원(하위 펀드 포함)

구분	직접투자	혁신(모험)펀드
주관	우리은행	우리은행, 정부
투자대상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성장 중소/중견기업
투자형태	대출, 메자닌(CB, PCPS 등), 지분 투자 등	
비고	2018년 100억 실행 2019년 200억 투자 예정	우리은행 펀드 3조원 조성 정부주도 펀드 22백억 이상 출자확약

❖ 중견기업 특화 서비스

중견기업 전담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업 I/II 영업본부 운영(기업지점장, RM 총 40명) • 기업영업지원팀 운영(11개) - 기업업무처리 특화 지점
글로벌 투자지원 솔루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타 자본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률서비스 • 투자거래시 수반되는 에스스로 관련 구조설계 및 계약 컨설팅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사업 지원 • 26개국 443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진출 및 발전 지원
수출입 특화 금융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 서류인수시 확정지급보증 발행 • 연지급신용장 추심 후 매입전환 확대 및 환가료 우대

❖ 문의

- 우리은행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1599-50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제도

● 확인개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활용 가능

● 확인대상

- 모든 국내법인 접수 가능 (중견기업 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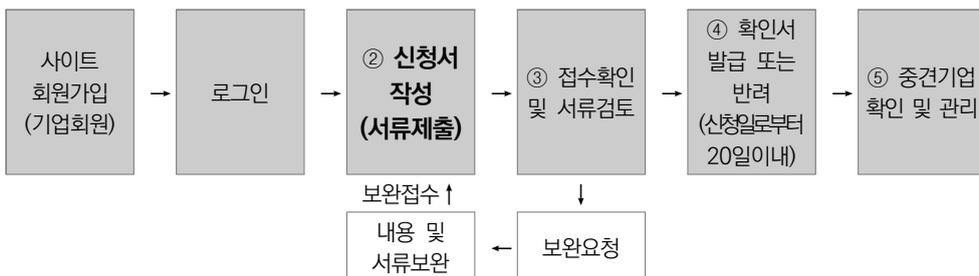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제외대상입니다.

-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②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③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④ 비영리법인
- ⑤ 외국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⑥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중견기업 확인 요건은 '중견기업 소개 - 중견기업이란?'에서 확인 (3p)

● 확인절차

-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을 통해 접수 및 발급 가능
- *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발급 비용은 무료
-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시,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



인재확보

기술혁신

국제화

경영혁신

제출서류

〈공통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신청서 작성시 파일(pdf)로 첨부
- * 주주명부 : 요약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대체가능(원본대조필, 개인정보 제외)
- *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 비외감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전자공시대상기업(dart.fss.or.kr)은 감사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1)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청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2.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재무제표 3.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4.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5.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손익계산서 등) 6. 법인등기부 등본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2.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재무제표 3.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손익계산서 등) 4. 법인등기부 등본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지배·국내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지배기업이 해외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지분관계 증빙자료)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지배기업이 해외법인인 경우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규모 증빙자료 또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 자산규모 증빙자료)	

2) '1)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업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지배·국내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지배기업이 해외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지분관계 증빙자료)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지배기업이 해외법인인 경우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규모 증빙자료 또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 자산규모 증빙자료)

기타사항

※ 중견기업 확인 유효기간

- 직전사업연도 결산월말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부여
(예) 2018년 12월 결산 → 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의 발급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내 반드시 접수

※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지원사업별 특례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준을 확인할 것

- 특례대상 여부 확인 필요시,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시 특례대상여부에 '예' 선택

※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단, 아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문의

- 홈페이지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994, 02-3275-0107
- ※ 유선 문의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 지원개요

-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제외업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지원절차

-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제출처 : (0415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02-3275-2985 (홈페이지 : www.dl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에너지다소비사업체의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에너지공장 보급확산 촉진

☞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27.5억원
- 지원내용 : 에너지경영 관련 컨설팅,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EnMS 기반의 스마트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지원개요

-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

❖ 지원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60억원(2019년 기준)
- 지원 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중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지정설비로서 2종 이상의 복수품목 지원
 - 고효율기자재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제안설비는 기존 전력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가능 예상품목이어야 하며, 공인시험성적서(효율·성능 및 전기안전) 및 설치운영실적 3개소 이상 추천을 증빙하여 신청해야 함
- 세부내용

구분	1차년도(보조금)	2차년도(성과금)	비고
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500만원 이내	-	ESCO등록기업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B등급이상)
계량전송장치 설치	500만원 이내	-	전력계량기 및 데이터수집장치(RTU)
효율향상설비 개체	설비설치비 80% 이내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효율향상설비 설비설치비 기준
에너지절감량 이행성과	-	153원/△kWh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nrbpm.kemco.or.kr)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효율자원팀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 지원개요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장에 대응역량향상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중소·중견기업
* '12~'18년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Eco-Best) 지원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 전액 국가 보조(100%)
- 온실가스감축 및 제도대응 컨설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
 - 사업장별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제도 대응을 위한 감축아이템 발굴
 - 감축기술 적용방안 수립 및 감축수단별 활용가능 정부지원제도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장 담당자 Man-to-Man 교육 실시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배출 할당량 신청 대응전략 수립
 - 중장기 예상배출량 도출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Tool 제공 등
 - 명세서, 이행계획서, 모니터링계획서 등 행정업무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NGMS(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ahreum@energy.or.kr)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크레딧 사업

☉ 지원개요

-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이 대기업(규제 대상)의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체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그린크레딧 사업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7,000만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중소기업지원사업]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 지원개요

- 경남·울산·부산·전남·전북지역 조선 관련산업 퇴직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과 해당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 지원대상

- 경남·울산·부산·전남·전북지역에 소재한 조선, 해양플랜트, 중소형선박, 친환경선박, 노후선박 개조, 수리조선, 선박 신소재, 자동차, 항공, 기계, 섬유, 전기전자 등의 관련 업종 중견·중소기업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2018년 2월 1일 이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 기존사업('16, '17, '18년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지원 가능
 - 기존 지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 신청시 기존 계약직 채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 기존 지원 인력이 중도퇴사한 기업은 제외
 - 기존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 제외
- 18년 추경사업(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의 서면평가 합격 기업은 콜센터 (051-974 -5599)로 별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퇴직인력 인건비(최대 3,000만원) 및 사업화지원비(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업부담금 : 현금 800만원, 현물 1,200만원(정부지원금 4,000만원, 12개월 지급 기준)기업부담금 현금 중 월 50만원 이상은 퇴직인력 인건비로 집행해야 함
- 지원인력 : 최대 2명(참여기업별 지원인력 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 퇴직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최저임금 준수 필수
- 퇴직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중도 협약 해지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등 타 퇴직자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ope@rims.re.kr
- 신청 서류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등

🌀 문의

- 중소기업지원연구원 : 051-974-55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정보화컨설팅 지원

❖ 지원개요

-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SW·IT서비스 분야 해외정보화컨설팅 수행을 지원

❖ 지원대상

- Smart-SOC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국내 ICT·SW기업(국내·외 프로젝트 구축·운영 실적 및 해외 구매컨설팅 실적 보유기업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대·중소·중견 컨소시엄 참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M/P) 수립 : 국가 정보화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 환경 분석, 구축 계획 등 영역별 로드맵 수립
 - 사전타당성조사(F/S) 수행 : 국가별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세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실행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수행
 -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 : 실제 프로젝트 실행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구축하는 소규모 시스템
 - 구매 컨설팅 : 프로젝트 입찰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 수립 및 감리를 위한 컨설팅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사업비 최대 112백만원 이내 규모로 지원
 - 총사업비 전액(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민간부담금 자율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요약서, 공동참여약서 등

🎯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진출팀 : 043-931-557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활용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 지원개요

-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우선 지원 제조 분야
 -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 첨단제조로봇(협업로봇·양팔로봇 등)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예산 90억 원(30개사 내외)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내용 상세〉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장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톨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협약서 등

❖ 문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 053-210-95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환경투자 촉진 및 환경친화적 의식제고

❖ 지원대상

- 사업장 내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분야	세부분야	업체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9.1분기 : 1.8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7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 산정 지원

☉ 지원개요

-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적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취득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환경성적표지 인증취득 완료 기업 중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신청보고서 작성 시 컨설팅을 받은 다음의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사회적 기업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목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제공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개 기업, 60개 제품
- 지원내용 : 인증신청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개 제품, 최대 15백만원 (탄소발자국 인증의 경우 최대 600만원)

지원금액(원)			
	환경성적표지 (7대 환경성정보)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최초	5,000,000	5,000,000	2,000,000
갱신	2,500,000	2,500,000	1,000,000
파생	2,500,000	2,500,000	1,000,000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팀
- 신청 서류 : 신청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팀 : 02-2284-1576

[한국임업진흥원]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지원개요

- 목재 업종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

☉ 지원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을 지원

☉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별관 2층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지원실 : 02-6393-2744

[IBK기업은행]

IBK시설투자대출

❖ 지원개요

-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지원대상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대상기업에게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문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IBK기업은행]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지원개요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

☞ 지원대상

-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구분	내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문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IBK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 지원개요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우량 협력 중소·중견기업 및 가맹점에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협약기관과의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단, 전액담보(80% 이상 신용보증서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이 없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내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IBK기업은행]

환경안전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환경안전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설비투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대출

☞ 지원대상

- 환경안전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IBK기업은행]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 지원개요

- 대기업, 발전사, 은행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 펀드”를 조성하여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로부터 보증추천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90% 부분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상 보증기한 이내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IBK기업은행]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2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단,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시설자금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 지원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중소·중견기업 대출신청 →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집행 → 사후관리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 지원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출신청 →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집행 → 사후관리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 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직접투자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9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산업은행]

KDB Global Challengers 200

🎯 지원개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200여개사를 선정 및 중점 지원하여 세계 일류 기업으로 육성
- * 예비중견기업 : 설립 7년 초과 및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 지원내용

대 출	▷	전용자금 2.5조원 및 고객우대
투 자	▷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 지원
M&A	▷	M&A 자문 및 인수금융 등 제공
채권발행	▷	채권발행 Coaching 및 투자자 Matching
파 생	▷	현물환수수료 우대 및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무역금융	▷	환가료율·수수료 우대, 외국환 인증업무 지원
컨설팅	▷	경영컨설팅(경영·재무, 해외진출 등) 제공
연 수	▷	산은아카데미 연계 금융연수 제공
자금운용	▷	예금금리 등 우대 제공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택1)
 - 방문접수 : 가까운 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서류 접수
 - 이메일접수 : kdb200@kdb.co.kr 앞 서류 전송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6, 6927

[한국산업은행]

시설투자 우대대출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설투자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운용규모 : 1조원
- 한도 : 중소기업(비영리법인)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사모사채 5년이내)
- 금리우대 : 원화 0.70%p, 외화 0.30%p 차감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해외직접투자 지원자금

❖ 지원개요

- 중소·중견 해외진출기업에게 지원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 지원대상

- 중소·중견 해외진출기업

❖ 지원내용

- 운용규모 : 5,000억원(중소·중견기업 3,000억원 우선배정)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 자금용도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금리우대
 - 원화 0.20%p(중소·중견기업 0.50%p) 차감
 - 외화 0.15%p(중소·중견기업 0.30%p) 차감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우량 중견(예비)기업 우대운영대출

☞ 지원개요

- 예비중견 및 중견기업에게 금리우대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중견*·중견 신규거래처(KDB신용등급BBBo 이상, 일부업종제외)
* 매출액 300억 초과 & 창업 7년 초과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운용규모 : 1조원
 - 한도 : 예비중견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
 - 지원기간 : 운영자금 1년 이내
 - 금리우대
 - KDB신용등급 A-이상 0.70%p 차감
 - KDB신용등급 BBB+~BBBo 0.60%p 차감
 - 예비중견·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기관* 추천(또는 선정)기업 추가우대 (0.05%p 차감)
-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동반성장대출

❖ 지원개요

- 대기업 우량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대기업 예치재원을 기반으로 금리우대 (2.0%p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기업 협력 중견·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운영 및 시설자금)
 - 한도성 운영자금과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은 제외
 - ① 동반성장 협약 체결(대기업→산업은행)
 - ② 재원조성(대기업 예치금 + 은행 자체자금)(대기업→산업은행)
 - ③ 업체추천(대기업→산업은행)
 - ④ 대출실행 및 금리인하(산업은행→협력 중소·중견기업)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KDB-CIB 융합 프로그램

☞ 지원개요

-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업성장단계별 최적의 금융지원 모델 제공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KDB-CIB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량 중소·벤처·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성장단계	CIB 융합 지원 모델*
초기기술벤처	투자 + 대출(테크노뱅킹, R&D) + M&A
성장 중소·벤처	투자 + 대출 + 외부 VC투자 연계 + 컨설팅
Pre-IPO·예비중견	투자 + 대출 + IPO 주권사 연계 + 해외진출
중견	투자 + 대출 + 회사채 발행 주선 + 구조화금융 + 컨설팅 + M&A + 해외진출

* 기업성장단계별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를 기재한 사항이며, 기업이 원하는 경우 타서비스 이용이 가능

☞ 지원절차

- 적격업체 선정(계량지표 기준)[산업은행] → 금융수요 조사서 작성[기업] → 기업 IR 실시(또는 금융상담)[기업] → 금융지원 모델 상담[산업은행] → 투융자 진행 가능여부 심사[산업은행] → 자금 지원[산업은행]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 02-787-5625, 02-787-5622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안전 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사모사채 형태로 금융 지원 및 금리우대(1%p)

☞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된 세액공제 대상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해외자원개발설비 제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상 명시된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고용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관련 설비투자(고용부)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환경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등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관련 설비투자(산업부)
-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 기타 안전시설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보강되는 설비에 대한 투자
- 통계청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에 따라 포함된 업종 등
- 그 외 국민위생 관련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종
- ‘안전대진단’에 따른 연계사업 수주기업 노후시설 개선대상 기업
- 국내 법규적 근거는 없으나 해외인증 등에 필요한 안전관련 장비(검사장비 포함) 도입 및 동 장비 제조업체의 관련 시설투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300억원
- 지원비율
 - 설비투자 중 안전관련 설비가 30% 이상인 경우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설비투자 중 안전관련 설비가 30% 미만인 경우 : 안전관련 설비 해당금액의 30% 이내
-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이내)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관련채 포함 5년이내)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온렌딩대출

❖ 지원개요

- 전통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은행이 중점 운영중인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제도로, 중개금융기관이 대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산업은행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기업대출스프레드
- 신용위험분담 :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KDB산업은행이 온렌딩대출 한도의 60% 이내에서 신용위험을 분담
- 지원한도

구분	기업규모	대출한도	신용위험 분담비율
일반온렌딩	중소	시설 : 50억원/운영 : 20억원(기업별 : 100억원)	50%이내
	중견	시설 : 150억원/운영 : 60억원(기업별 : 300억원)	분담없음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중소	시설 : 150억원/운영 : 60억원(기업별 : 300억원)	60% 이내
	중견	시설 : 200억원/운영 : 100억원(기업별 : 400억원)	분담없음
스마트공장보급 지원	중소	시설 : 100억원/운영 : 50억원(기업별 : 200억원)	분담없음
	중견	시설 : 200억원/운영 : 100억원(기업별 : 400억원)	분담없음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0575, 0576, 0580

[한국산업은행]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 지원개요

-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전략, 재무전략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사업타당성 검토
- 전사·사업·기능 전략 수립
- 재무상태 진단 및 자금조달 방안 검토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지원개요

-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중견기업

※ 가입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 지원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지원
-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제도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 억원)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편입한도	250	220	170	120	70	50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K5이상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70	50	40	30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III·IV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발행금리

-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3.05(A등급)~4.75%(BB-등급) 수준

❖ 지원절차

- 중견기업은 거래증권사를 통해 편입 신청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시설자금보증

☉ 지원개요

-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 기업이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을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내 (최고 100억원)
-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이상 해지 시 0.1%p 할인
- 보증기간 :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

❖ 지원개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 중소, 중견 및 대기업

❖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상품	대상채무
이행입찰	경쟁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계약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차액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지급	발주처가 공급하는 선급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하자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상품	보증금액	한도금액
이행입찰	입찰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또는 입찰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해당액	입찰금액
이행계약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해당액	계약금액의 30%
이행차액	예정금액 - 낙찰금액(계약금액)	【예정가격 - 낙찰(계약)금액】× 200%
이행지급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해당액	계약금액의 30%
이행하자	주계약에 따른 지급보증 소요금액	주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운전자금 보증 한도 중 적은 금액

- 보증비율 : 100%(고정비율)
- 보증료
 - 이행입찰보증 0.1%(최소보증료 5,000원), 이행계약·차액·하자보증 0.6%(최소보증료 5,000원)
 - 이행지급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같이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이 적용됨
- 보증상대처
 - 정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M&A 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 M&A기업 및 피M&A기업은 다음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및 개인기업으로 한정

- 합병 : 상법상 회사간 합병만 인정하고, 피M&A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 주식인수 : 피M&A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가능
- 영업양수 : 피M&A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 * 기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기업의 순자산이 부의 상태인 기업

- M&A기업 및 피M&A기업이 관계기업이거나 신보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할 경우 보증대상기업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 M&A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M&A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M&A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데 따른 대출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정

- 피M&A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간 M&A
-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미래성장기업군별로 차등 적용) ②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 지원개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구분	분야	대상기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지원절차

- 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문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홈페이지 :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산업 지원

☉ 지원개요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산업 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

☉ 지원대상

분야	대상기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및 공급기업(예정기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 또는 기선정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우대사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 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참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90%) • 보증료 0.2%p 감면

☉ 지원절차

- 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문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홈페이지 :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

❖ 지원개요

-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19년 1,100억원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문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9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61-900-6265

2019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대표전화 1577-09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대표전화 02-3275-2985)

인쇄 경성문화사
